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변경 및 하한액 명시〉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61, 2200062, 2200063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II. 검토의견 :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변경 및 하한액 명시	5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변경	20
2. 생활조정수당 지급 하한액 명시	24
※ 참고자료	28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4. 5. 31.
- 3) 회부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

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 13조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4. 5. 31.
- 3) 회부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

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4. 5. 31.
- 3) 회부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낮아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II. 검토의견 :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 변경 및 하한액 명시

□ 3건의 개정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상이 되도록 정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생활수준을</u>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생활조정수당) ① ----- ----- ----- -본인과 그 동거가족(「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를 말한다. 이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같다)의 <u>생활수준을</u>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생략)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제15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③ -----
-----지급액은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생활조정수당 지급 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동거가족은-----

-----.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④ (생략)

제15조(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사·질문 등) ① -----

-----동거

가족에-----

-----동거

가족의-----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

동거가족이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동거가족이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u>부양의무자의</u>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 -----. ② ----- -----<u>동거가족의</u>----- ----- ----- ----- ----- -----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생활수준을</u>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 ----- ----- -----<u>본인과 그 동거가족(「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를 말한다. 이하</u>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생 략)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에서 같다)의 생활수준을-----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지급액은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생활조정수당 지급 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
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
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
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국
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
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
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
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
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
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

-----동거가족은-----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

동거가족에-----

동거가족의-----

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동거가족이-----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동거가족이-----

를」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

-----.

② -----
-----동거가족의-----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양로지원) -----

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u>부양의무자가 없는</u>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 ----- ----- -----<u>부양의무자</u>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 ----- ----- ----- ----- ----- -----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u>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과 그 동거가족(「주민등록법」 제7 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 녀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2부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생 략)
②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

터 제14조의4까지에서 같다)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급액은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생활조정수당 지급 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동거가족은-----

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
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
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국
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
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
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
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
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
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
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
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

동거가족에-----

동거가족의-----

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
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
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
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
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
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
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
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
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
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

② (현행과 같음)

③ -----

-----동거가족이-----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동거가족이-----

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19조(양로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

-----.

② -----
-----동거가족의-----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양로지원) -----

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u>부양의무자가 없는</u> 자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 -----<u>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u>----- ----- ----- ----- ----- ----- ----- ----- ----- -----.
--	--

□ 3건의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그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하한액을 명시하려는 것인바, 이하에서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하였음.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변경 : '부양의무자' 요건 삭제

□ 현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음.¹⁾

○ 그 결과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게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소를 달리하여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계

1) 「국가유공자법」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훈보상자법」 제13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립유공자법」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생활조정수당)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 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부고시 제2024-7호) 제8조(생활조정수당)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한편, 보훈관계법령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과 생계지원금(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을 정하고 있는데, 생계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 수급권 확인·심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될 경우, 생계지원금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폐지되는 효과가 있음.²⁾³⁾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대상 인원 및 금액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정안)	합 계
추가 대상 인원	3,580명	10,140명	816명	14,536명
소요 예산	약 96억원	약 266억원	약 29억원	약 391억원
비 고	중상이자 등	65세 이상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시	

※ 국가보훈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하여 수급희망자가 중상이자인 경우(2023년) 및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2024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부양의무자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음.⁴⁾

자료: 국가보훈부

-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제4항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4항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3)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현재 고시 개정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80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 지급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게 됨.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⁵⁾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 강화로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⁶⁾

□ 다만, 개정안은 생활수준 조사의 기준이 되는 ‘동거가족’의 범위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로 하고 있는데, ① 배우자 및 30세 미만 자녀는 거소를 달리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생활수준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반면, ② 현역군인 등 의무복무 이행자 또는 가출·행방불명 등으로 행정청으로부터 확인된 자 등의 경우에는 생활수준 조사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거가족’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⁷⁾

□ 한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

4)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부고시 제2024-7호) 제3조(부양능력 등) ③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순위자(수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조의3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1~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3. 65세 이상 노인

5)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2021년 10월부터 동 기준을 폐지하였음.

6)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의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검토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의안번호 제2023-875호).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조사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기준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부도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조사의 기본단위로서 ‘가구원’을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음(「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추가되는 대상 인원은 14,536명이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약 39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급희망자가 중상이자인 경우는 2023년에,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2024년에 각각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이 제외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실질적 예산 소요는 약 2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구 분		지급액(천원)	추가인원(명)	예산(천원)
3인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242	88	255,552
	중위소득 40% 이하	277	100	332,400
	중위소득 32% 이하	311	597	2,228,004
4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300	7	25,200
	중위소득 40% 이하	336	8	32,256
	중위소득 32% 이하	370	16	71,040
계			816	2,944,452

자료: 국가보훈부

- 그 밖에, 3건의 개정안 중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안」의 경우 법 제14조제2항을 개정하면서 “부양의무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삭제 되었으므로, 이를 제54조의2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거소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생활수준 조사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는 단순히 동거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

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⁸⁾

- ☐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3건, 정부 제출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⁹⁾

2. 생활조정수당 지급 하한액 명시

- ☐ 현행법령은 국가유공자 등의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생활 조정수당을 24만 2천원부터 37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가구원 수	소득수준	지급액
3인 이하	중위소득 32% 이하	31.1만원
	중위소득 40% 이하	27.7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24.2만원
4인 이상	중위소득 32% 이하	37만원
	중위소득 40% 이하	33.6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5 재구성¹⁰⁾

- ☐ 개정안은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한

8) 현행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부고시 제2024-7호)는 조사가구원의 범위(고시 제2조제1항) 및 제외 사유(같은 조 제2항)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9)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3건(2024. 6. 28. 회부)

－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1067호),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1069호),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1081호)

정부 제출안 개정안 3건(2024. 7. 1. 회부)

－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1151호),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1153호),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1184호)

10)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의3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3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생계가 어려운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조정할 경우 법률에 따른 지급액의 하한(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국가재정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채원 마련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2025년 생활조정수당 월지급액 증가액¹¹⁾ >

(단위: 천원)

가구원 수	소득수준	지급액		
		현행 (2025년 추정치)	개정안 ¹²⁾	증가액
1인	중위소득 32% 이하	321	662	341
	중위소득 40% 이하	286	568	282
	중위소득 50% 이하	250	355	105
2인	중위소득 32% 이하	382	1,147	765
	중위소득 40% 이하	347	992	645
	중위소득 50% 이하	309	641	3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1)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현행(3인이하, 4인 이상)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2023년 기준 기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인(약 65.79%) 및 2인(24.48%) 가구의 지급 증가액을 예시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2](29p) 참조.

12)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 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추정값(1인: 236.5만원, 2인: 387.9만원)을 기준으로, ②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되는 수준으로 하고, ③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통하여 기준 중위소득 32%를 보장받으므로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 32%로, ④ 그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중간값(중위소득 36%, 45%)의 중위소득을 갖는다고 가정하였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지급증가액	117,899	143,885	175,156	213,326	259,688	909,9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둘째, 생활조정수당과 유사한 취지인 생계지원금과의 수당 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¹³⁾¹⁴⁾ 이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다른 보훈대상자들로부터 지원 수준 상향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국가재정 부담이 야기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생계곤란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수당 제도 변화 >

구분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소득기준	(현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급금액	(현행) 매월 24.2~37만원 (개정) 매월 35.5~297.3만원	매월 10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3) 다만, 3건의 개정안과 같이 발의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제2200059호,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은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상이 되도록 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음.
- 14) 「참전유공자법」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엽제법」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5·18유공자법」 제89조의2(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5·18민주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국가보훈부는 지급액과 소득인정액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는 것은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이라는 ‘보훈보상의 원칙’을 넘어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최우선하는 것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2

참고1

생활조정수당 개요

□ 개요

- (사업내용)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 (대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사망·부상·특별공로자

□ 지원내용

- (지급기준)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 (지급액) 24.2만원 ~ 37만원

가구원 수	소득수준	지급액
가족 3인 이하	중위소득 32% 이하	31.1만원
	중위소득 33~40%	27.7만원
	중위소득 41~50%	24.2만원
가족 4인 이상	중위소득 32% 이하	37만원
	중위소득 33~40%	33.6만원
	중위소득 41~50%	30만원

□ 지원현황: 21,540명, 775억원 지원 ('24년 예산 기준)

참고2

생활조정수당 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¹⁵⁾

□ 개정안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월지급액 증가액 추정(2025년)

(단위: 천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 소득 60% (a)	국가유공자 소득인정액 (b)			생활조정수당 (c)			개정안에 따른 지급증가분 (a-b-c)		
		50% 이하 (중위 45%가정)	40% 이하 (중위 38%가정)	32% 이하 (중위 32%가정)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
1인	1,419	1,064	851	757	250	286	321	105	282	341
2인	2,327	1,745	1,396	1,241	250	286	321	332	645	765
3인	2,972	2,229	1,783	1,585	250	286	321	493	903	1,066
4인	3,603	2,702	2,162	1,922	309	347	382	591	1,094	1,300
5인	4,196	3,147	2,517	2,238	309	347	382	740	1,332	1,576
6인	4,755	3,566	2,853	2,536	309	347	382	879	1,555	1,837
7인	5,293	3,970	3,176	2,823	309	347	382	1,014	1,770	2,088
8인	5,832	4,374	3,499	3,110	309	347	382	1,149	1,986	2,340
9인	6,371	4,778	3,823	3,398	309	347	382	1,283	2,202	2,591

□ 개정안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연간지급액 증가액 추정(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가구 원수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중위 50% 이하	중위 40% 이하	중위 32% 이하	중위 50% 이하	중위 40% 이하	중위 32% 이하	중위 50% 이하	중위 40% 이하	중위 32% 이하	중위 50% 이하	중위 40% 이하	중위 32% 이하	중위 50% 이하	중위 40% 이하	중위 32% 이하	
1	1,517	5,788	4,208	1,952	7,181	5,277	2,499	8,897	6,383	3,183	11,007	8,074	4,037	13,599	9,938	400,966
2	2,271	6,215	3,269	2,762	7,511	3,989	3,357	9,073	4,800	4,078	10,958	5,840	4,951	13,231	7,007	313,363
3	744	1,933	9,932	897	2,322	11,926	1,081	2,788	14,318	1,302	3,348	17,188	1,568	4,020	20,630	93,996
4	604	1,304	6,006	737	1,577	7,251	871	1,869	8,599	1,046	2,237	10,288	1,256	2,676	12,307	58,628
5	306	486	3,105	369	583	3,724	435	689	4,401	519	820	5,239	620	976	6,236	28,510
6	21	227	983	26	271	1,172	30	318	1,379	36	377	1,633	42	447	1,934	8,895
7	49	43	660	59	51	783	69	60	917	81	70	1,081	95	83	1,274	5,375
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31	0	0	37	0	0	43	0	0	50	0	0	59	0	0	219
합계	117,899			143,885			175,156			213,326			259,688			909,953

15)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참고3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생활조정수당)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2,382,0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금액의 50%	1,191,000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기준금액의 40%	952,800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기준금액의 32%	762,240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기준금액 50%는 4,705,810원, 40%는 3,764,648원, 32%는 3,011,718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가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지)청장이 재해·재난·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활조정수당수급자(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
2.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3. 무공수훈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4.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

5.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⑤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보류한다.

1.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
2.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판정신체검사 판정일
3.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심사 결정일
4.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가 확인된 날
5.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

⑥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조정수당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조사 방해·기피·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5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